

예산총칙

2019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54,303,725	16,629,112
일반회계	452,946,883	13,588,406
특별회계	101,356,842	3,040,705
기타특별회계	101,356,842	3,040,705
상수도특별회계	22,056,730	661,702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955,887	28,677
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	2,125,820	63,775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685,587	20,568
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	23,325,445	699,763
청사건립특별회계	52,207,373	1,566,221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없다"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942,621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직무수행경비
3. 법정 의무부담금(연금부담금, 국민건강보험금, 연금지급금, 사회복무요원보상금)
4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
5. 재해대책 및 복구비

제 7 조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보조금, 교부세, 조정교부금,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.